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8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41124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redacted]공사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10. 선고 2016구합75210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9.
판 결 선 고	2018. 4.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 내역 기재 각 등록면허세(합계 12억 3,980만 원) 및 각 지방교육세(합계 2억 4,796만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8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 3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20행부터 5면 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쟁점 규정은 혁신도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5. 12. 31.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 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등의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지원 방안 중의 하나이다(혁신도시법 제1조, 제48조 제1항).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은 영리법인의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에 대하여는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가가액의 1천분의 4'로 정하여져 있는 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대하여는 '건당 112,500원'으로 정하여져 있는 등 법인등기의 사유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쟁점 규정은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의 사유를 묻지 않고 전부 등록면허세의 면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기 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4조의2에서 등록세가 면제되는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를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1항이 그 감면 대상을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8

전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하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이러한 이 사건 쟁점 규정의 취지,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쟁점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를 불문하고 그 정한 기한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4506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등록면허세 등은 이 사건 쟁점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영

판사 신숙희

판사 이승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8

경정청구 내역

자본금	납부일	경정청구세액(기납부세액)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1,250억원	2012.6.11.	2억 5,000만원	5,000만원
50억원	2012.7.9.	1,000만원	200만원
50억원	2012.10.5.	1,000만원	200만원
50억원	2012.11.30.	1,000만원	200만원
100억원	2013.1.2.	2,000만원	400만원
500억원	2013.2.19.	1억 원	2,000만원
1,200억원	2013.3.4.	2억 4,000만원	4,800만원
100억원	2013.6.28.	2,000만원	400만원
300억원	2013.9.16.	6,000만원	1,200만원
150억원	2013.10.16.	3,000만원	600만원
150억원	2014.6.18.	3,000만원	600만원
1,300억원	2014.7.8.	2억 6,000만원	5,200만원
200억원	2014.10.15.	4,000만원	800만원
50억원	2014.11.14.	1,000만원	200만원
325억원	2014.12.10.	6,500만원	1,300만원
224억원	2015.1.16.	4,480만원	896만원
100억원	2015.6.10.	2,000만원	400만원
100억원	2015.6.27.	2,000만원	400만원
합계(6,199억원)		12억 3,980만원	2억 4,796만원